

감사 결과(산업기술시험원 직원 공용차량 사적사용 관련)

1. 감사 개요

☐ 감사배경

-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관련 신고사항(공용차량 사적사용)을 우리부에 이첩하여 감사 실시

☐ 감사 기간 : '25. 3. 31.~ 4. 11.(10일간)

☐ 처분요구일 : '25. 5. 9.

2. 감사 결과

- ▲◎◇은 '22. 1. 3.~'23. 3. 31. 기간 동안 총 19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
 - 출·퇴근 용도로 16회, 무단 출장 후 퇴근 용도로 1회, 휴일에 사적으로 2회 사용한 것으로 확인
- ◆□△은 '22. 3. 8.~'23. 1. 27. 기간 동안 총 49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
 - 출·퇴근 용도로 39회, 무단 출장 후 출·퇴근 용도로 6회, 출장중 또는 휴일에 사적으로 4회 사용한 것으로 확인
- ♠▣◆은 시험원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▲◎◇과 ◆□△의 하이패스 기록에 대한 점검 업무 소홀

3. 조치 내용

- [신분상 조치]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◆□△에 대해 “징계” *,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♠▣◆에 대해 “주의” 요구

* ▲◎◇은 '23. 12. 31. 퇴직하여 “징계” 처분 불가

- [행정상 조치]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▲◎◇, ◆□△에 대해 과태료 부과 “통보” 및 부당이득 환수 “시정” 요구
 - 임직원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“기관 주의” 요구